

<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정오표>
- 평가지표 설명회(2020.6.25.) 자료집 기준 -

수정일자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2020.11.4	p.25 인정범위 문구수정 및 추가	<p>5. 직원의 인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5-④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</p> <p>- 관련문서 : 연간 교육계획서</p> <p>- 인정범위 :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등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4시간 이상(인권교육이 포함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참가도 인정)</p>	<p><문구 수정 및 추가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5-④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</p> <p>- 대상기간 : 2020.1.1.~2020.12.31.</p> <p>- 관련문서 : 연간 교육계획서</p> <p>- 인정범위 :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등 직원의 인권 관련 교육을 19-④의 인권교육과 별도로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</p> <p>※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: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(UCC, 인권영화, 인권영상 등), 전문강사에 의한 인권교육(on-off line 모두 가능), 인권 관련 기관 탐방 등(단,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는 이용자의 인권이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온라인 교육의 경우 유료증 필수 구비) 및 동영상자료의 경우 출처 등을 제시하여야 함)</p> <p>※ 법정 의무교육은 인권교육에서 제외</p>